

2015년도 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중견기업의 혁신기술과 디자인 융합으로 2~3년 앞단의 미래시장을 예측하여 디자인전략 및 상품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시장의 선두주자로 도약하기 위해 「2015년도 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26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에게 디자인을 통한 미래시장 수요를 예측하고 다양한 상품정보를 활용하여 전략적 미래상품 및 선행 디자인을 개발하여 글로벌 미래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반지원 사업

지원규모 : 14억원

지원내용 : 미래전략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개발

지원대상

-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중심의 성장가능성 및 매출증대 효과가 높은 기업
* 예 : WC300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등

지원분야 : 미래시장 창출 기회가 높은 분야

- ① 고령화 사회를 대비 할 수 있는 분야 (건강, 의료분야 등)
- ② 안전하고 스마트한 사회를 대비 할 수 있는 분야(스마트 가전, 로봇,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보안, 이동수단 관련 등)

③ 지속가능한 자연과 사회 분야 (에너지 관련 시스템 등)

④ 기타 ICT 기반의 미래 Life-context 창출 분야 등

2. 지원내용 및 조건

□ 미래 소비자를 비즈니스 주체로 전환하여 미래환경과 고객 Life Context 분석, 연구를 기반으로 미래상품 디자인전략 수립 및 이를 통한 디자인 개발

○ 미래전략 디자인

- 향후 2~3년 후의 미래 소비자의 Core Needs를 분석하여 신시장 창출에 필요한 요소기술,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트렌드, 시나리오 등을 고려한 전략 수립

[미래상품 디자인 전략 단계별 추진내용]

	구분	주요 연구내용
① 미래 환경 예측	STEEP 중심의 거시 환경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3년 내외의 사회, 기술, 환경 동향분석 • 중소기업 대상사업의 산업 환경 및 동향분석
	Mega Trend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별 대상시장별 Desk Research 및 미래 예측 데이터 분석 후 미래 트렌드 정립
	포커스 Feature 및 Life style 키워드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시환경과 미래 트렌드 분석을 통한 기업의 기회요소 및 핵심 소비자가치 도출
② 미래 고객 Needs 분석	Micro Trend 연구 및 가설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고객집단, 분야별 세부 트렌드 예측 • 세부 트렌드별 기회요소 도출 가설 정의
	Expert Dynam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가치창출 기회요소 도출,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 및 필터링
	미래고객가치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별 대상시장 고객의 Needs를 정립하고 창출 가치 도출
③ 미래 가치 창출 UX 시나 리오	미래가치창출 Concept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시장 고객별 가치창출 Concept 전개 • 유사 미래시장 벤치마킹 • 미래고객 맞춤형 컨셉 도출
	미래 시나리오 아이디어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cept별 가치창출 아이디어 개발 워크숍 (디자이너, 기업, 분야별 전문가 참여)
	미래고객 체험가치(UX) 시나리오 및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가치창출 아이디어별 고객체험 시나리오 도출 및 실현을 위한 비즈니스 전략 연구

○ 선행디자인개발

- 미래디자인 전략 결과를 기반으로 중소·중견기업이 2~3년 이후에 상품화할 수 있는 미래제품(Future Product) 디자인과 사업화 전략모델을 개발
 - ① 제품 디자인개발 : 미래디자인 전략 연구에서 도출된 미래가치창출 Concept을 구체화 하여 아이디어 스케치, 렌더링, 모델링, UX 디자인, 적용기술 정립을 구체화하는 미래제품 디자인개발
 - ② 사업화 전략모델 개발 : 미래제품 디자인 결과를 상품화 하기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비즈니스창출 실행할 수 있는 사업화 전략모델을 개발

[선행디자인개발 단계별 추진내용]

구분		주요 연구내용
① 제품 디자인개발	Concept Develop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가치창출 Concept 별 구체화 • 미래가치창출 콘텐츠(제품) 개념 확립 및 상품화 방향 정립
	Ide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가치창출 제품 아이디어 개발 • 미래가치창출 제품 구성요소 적용 연구 (적용기술, 소재, 후가공 등)
	Visual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제품 Technical Drawing • 미래제품 2D / 3D Rendering • 미래제품 구성요소 및 Spec 적용 연구
	Prototype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킹 Mock-up (시제품)개발 • 미래제품 구현 기술적용 연구
② 사업화 전략 모델개발	미래가치창출 플랫폼 가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고객집단 별 비즈니스 창출 플랫폼 정립 • 대상 플랫폼 별 미래 고객집단 세분화
	미래 비즈니스 영역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사업화 비즈니스 창출 영역 연구 및 세분화
	미래 비즈니스 전략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별 미래시장 확정 및 사업화 전략 수립 • 미래 사업별 관계가치사슬 연계방안 정립

□ 지원조건

과제구분	지원금액	개발기간	지원 비중	기타
미래상품 디자인전략	1.4억원 이내	6개월 내외	총사업비의 60~75% 이내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현금부담
선행디자인개발	1.2억원 이내	5개월 내외		

* 정부지원금 범위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 기업부담금 : 중소기업 총사업비의 25%, 중견기업 총사업비의 40%

3. 참여기관 자격요건

□ 협력기관(1) : 디자인전문기업, 컨설팅 및 리서치 전문기업 등

○ 디자인기획 및 전략수립, 조사, 분석을 기반으로 한 리서치전문기업(기관), 마케팅전문기업(기관), 경영전문기업(기관), 전략수립전문기업(기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 협력기관(2) : 디자인전문기업

○ 디자인전문기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 확인방법 : <http://designfirm.kidp.or.kr> 에서 '전문회사조회' 메뉴를 통해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기업 확인가능

* 우수디자인전문회사 ('14년 ~ '15년) 가점부여

구분	주요 역할	담당기관
수행기관	과제선정, 협약체결,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현장평가, 과제일부 참여, 사업추진점검 등 과제 관리	한국디자인진흥원
협력기관(1)	미래전략디자인	리서치, 마케팅, 컨설팅 디자인전문기업 등
협력기관(2)	선행디자인개발	디자인전문기업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15.3.26(목) ~ '15.4.27(월), 18:00까지

□ 과제 신청절차

- 중소기업과 협력기관1(리서치 및 컨설팅 전문회사 등)과 협력기관2(디자인전문회사)간의 자율 매칭후 수행기관(한국디자인진흥원)에 신청

□ 신청방법

- 접수안내 및 양식교부

- 중소기업청(www.smba.go.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한국디자인진흥원(www.kidp.or.kr) 홈페이지 공고 참조

- 접수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비즈니스지원센터(접수확인 : 070-4698-6013)

-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 * 주 소 : (우)305-500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8로 49 (용산동 546번지)
-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제출
- * 마감일 18:00까지 신청서(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과제평가 및 추진절차

□ 평가 및 지원기업선정

- (평가) 글로벌 상품이 가능한 제조업 중심(협력기관 컨소시엄 포함)의 성공 가능성이 높고 매출증대 효과가 높은 기업을 선정

- * 협력기관 : 리서치, 컨설팅, 마케팅 및 디자인전문기업 등

- 기업의 재무 건전성, 수출경쟁력, 사업화 역량, 경영능력 등

- 해당제품과 관련하여 개선된(혹은 새로운) 기술성, 기능성, 사업화 가능성 및 서비스 모델이 디자인과 융합하여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 등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지원기업 선정에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 평가위원(7인 이내) :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
- (우대조건)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비수도권 소재기업, 희망엔지니어적금 및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등 우대가점 부여

구분	기준	점수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World Class 300 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글로벌 전문기업, 지역형 강소기업	5
희망엔지니어 적금 및 내일채움공제	희망엔지니어 적금 및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매출액 100억당 1명 가입을 만점으로 최대 5점 부여 예시) 매출 1,000억, 5명 가입 → 2.5점 부여	5
비수도권 소재 기업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역소재 기업	3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우수디자인전문회사 등록업체('14~'15)	3

* 우대가점은 기업당 최대 10점

□ 추진절차

추진절차	추진내용
서면·현장평가(필요시)	○ 관련서류 검토 및 디자인 개발인프라, 미래시장 창출, 인프라 등 현장점검
대면평가	○ 기술력, 사업화, 시장개척 역량 등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지원과제 선정	○ 최종 지원대상 과제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미래상품 디자인전략 및 선행디자인개발
진도관리 및 평가	○ 중간점검 워크숍 ○ 과제평가, 사업평가, 개선점 도출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 사업비 정산보고 및 결과보고 ○ 사후관리를 통한 성과활용

6. 지원제외 사항

□ 지원제외

- 사업에 참여하는자(주관기관, 협력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기업의 부도
-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③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④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⑤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⑥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 ⑦ 자본전액잠식
- ⑧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7. 기타 공지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 (주관기관, 협력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 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동 사업은 주관기관(중소·중견기업)이 협력기관(1, 2)을 반드시 연계 후 신청해야 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 운영지침'에 따른다.

8. 문의처

- 상담 및 문의처

구 분	담당부서	연락처
사업 내용 및 작성 관련 문의	한국디자인진흥원 비즈니스지원센터	070-4698-6013

2015년도 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 신청서

1. 과제명					
2. 지원기업	기업명		기업구분	중소(), 중견()	
	설립년월일		상시종업원수(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3. 지원기업 대표자	주생산품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휴대전화		
	팩 스		전 화		
4. 지원기업 총괄책임자	이 메 일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휴대전화		
	팩 스		전 화		
5. 개관기관	이 메 일				
	총개발기간 : 20 . . . ~ 20 . . . (개월)				
	6. 사업비 (단위: 천원)	정부출연금	민간(기업) 부담금		계
		원금	원물	소계	
7-1. 협력기관1	기업(관)명	대표자	전 화	주소	
	협력기관1 과제책임자				
	성 명	부서·직위	전 화	휴대전화	
				e-mail	
7-2. 협력기관2	기업(관)명	대표자	전 화	주소	
	협력기관2 과제책임자				
	성 명	부서·직위	전 화	휴대전화	
				e-mail	
7-3. 협력기관3	기업(관)명	대표자	전 화	주소	
	협력기관3 과제책임자				
	성 명	부서·직위	전 화	휴대전화	
				e-mail	

※ 지원기업은 본 과제 사업공고의 주관기관을 의미함.

관련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사업신청 및 계획서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협 력 기 관 명(1) :

대 표 자 : (인)

협 력 기 관 명(2) :

대 표 자 : (인)

협 력 기 관 명(3) :

대 표 자 : (인)

주관기관 대표자 : (인)

한국디자인진흥원장 귀하

※ 협력기관 수에 맞게 양식 수정 가능

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

2015년도 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 사업계획서

2015. .

업 체 명

사업계획 요약서

※ 최종 제품(기술) 내용·용도 및 목표 시장의 정의, 경쟁제품(기술)과의 차별성, 예상 시장규모 및 경제적 기대효과, 디자인개발전략 및 추진방안, 사업화 보유역량에 대해 2~3페이지 분량으로 요약·기술

1. 최종 제품(기술) 개요

2. 개발필요성 및 경쟁제품(기술)과의 차별성

3. 예상 시장규모 및 경제적 기대효과

4. 제품(기술)에 대한 디자인개발전략, 추진방안

5. 사업화 보유역량 (성공사례 등)

6. 사업예산

- 총사업비 : 천원
(정부지원금 : 천원 / 민간부담금 : 천원)

- 인건비 : 천원

- 직접비 : 천원

목 차

1. 디자인개발 대상 제품(기술)	
가. 대상제품(기술)의 개요	
나. 대상제품(기술)의 디자인개발 필요성	
2. 추진배경 및 기술 확보 현황	
가. 추진배경	
나. 디자인개발 및 사업화 성공 시 예상되는 파급효과	
다. 사업화대상 제품의 기술개발 수준	
3. 개발목표 및 내용	
가. 최종 개발목표	
나. 개발내용 및 범위	
4. 추진전략 및 체계	
가. 추진전략	
나. 사업추진 조직도	
다. 사업추진 일정	
5. 사업화 계획	
가. 시장현황 및 사업화 전망	
6. 총 사업비 현황	
가. 사업비 구성현황	
나. 사업비 사용 계획	
7. 사업비 세부내역	
가. 사업비 총괄	
나.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8. 기관 현황	
가. 참여인력 현황	
나. 기업(기관) 정보 현황	

1. 디자인개발 대상 제품(기술)

가. 대상제품(기술)의 현황

※ 예시) 제품유형, 제품구성 핵심기술, 대상소비자 및 시장현황 등에 대한 상세내용 등

나. 대상제품(기술)의 디자인개발 필요성

※ 예시) 글로벌 브랜드 가치창출 가능성, 미래시장에서의 디자인 Needs 등

2. 추진배경 및 기술 확보 현황

가. 추진배경

1) 해당 제품관련 산업의 특성 및 성장성 등

2) 디자인을 통한 사업화 경쟁력

나. 디자인개발 및 사업화 성공 시 예상되는 파급효과

1) 기술적 측면

2) 산업·경제적 측면

3) 사회적 측면

다. 대상제품의 기술 개발 수준

※ 현재까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기술개발을 완료하였는지 서술 (필요시 사진, 이미지 등 포함)

3. 개발목표 및 내용

가. 최종 개발목표

1) 정량적 목표

※ 최종산출물에 대한 상세내용 (예, 미래상품 디자인전략 보고서, 사업화 전략보고서, 렌더링 o건, 목업 o건, 워킹목업 o건, 지식재산권 출원 o건 등)

2) 정성적 목표

※ 디자인전략 및 선행디자인 개발을 통해 달성 가능한 것 (예, 원가절감, 생산공정 개선, 생산성 향상 등)

나. 개발내용 및 범위

※ 본 사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디자인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상세 내용

(범위 및 내용, 계획상품 내용 및 용도, 기존제품과의 차별성, 기존제품(기술)과 디자인의 융합기술 접목방법 등) 기재

1) 디자인전략 개발을 위한 수행 계획

※ 전략수립을 위한 리서치 및 컨설팅·자문 방법 등 기재

2) 선행디자인 개발을 위한 수행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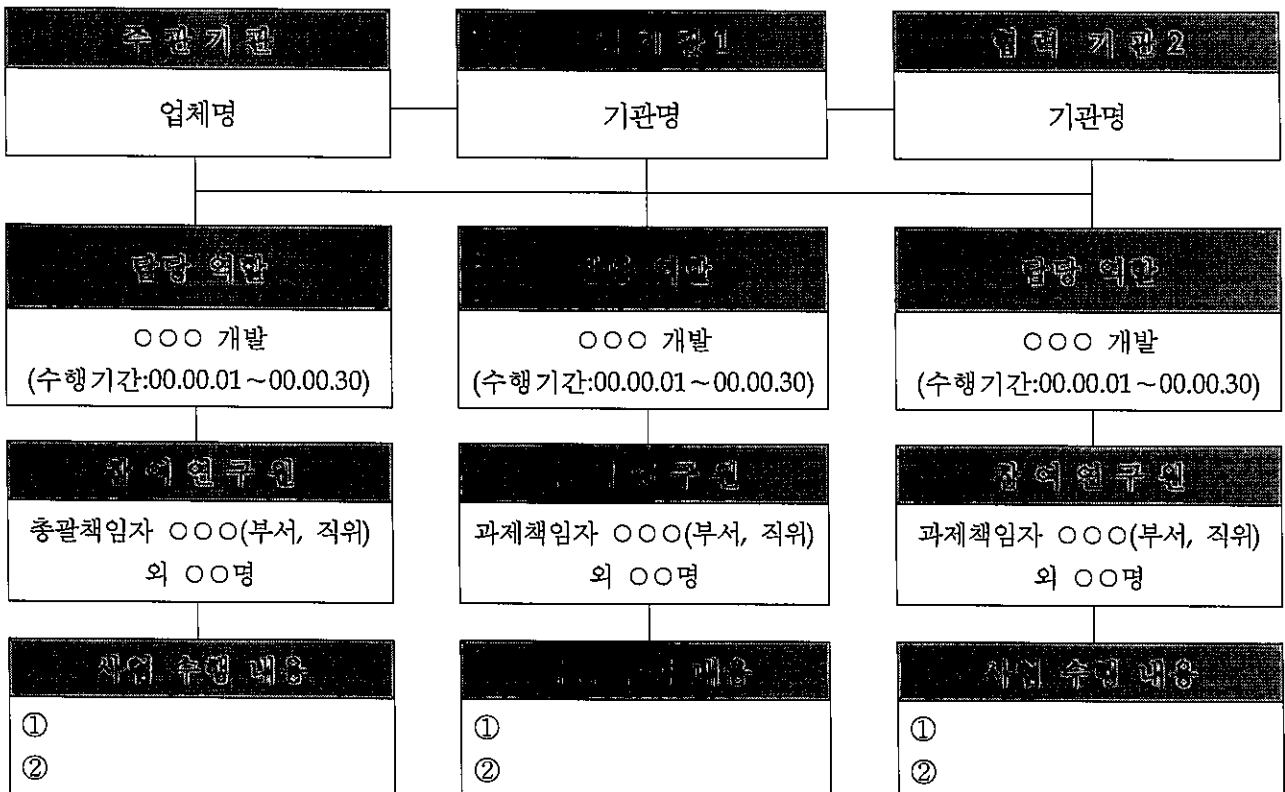
※ 디자인 개발 방법 및 사업화 전략 모델 개발 방법 등 기재

4. 추진전략 및 체계

가. 추진전략

※ 차별화된 추진전략 및 방법 제시

나. 사업추진 조직도



다. 사업추진 일정

일련 번호	사업내용	추진일정							기간 (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	예) 시장조사 - 기초자료 문헌조사.....								
	예) 개발완료일								
계									

※ 추진일정의 소요기간은 그래프 형태로 표기

5. 사업화계획

가. 시장 현황 및 사업화 전망

1) 디자인개발 제품이 목표로 하는 국내외 주 시장 및 주요 고객

※ 목표 고객집단이 누구이며 계획상품이 충족시켜야 할 고객의 편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서술

2) 경쟁상품 및 경쟁사 개요

※ 관련시장 동향 및 가치, 관련분야 분석 및 진단 포함

3) 국내외 예상 시장규모

※ 시장 분석, 목표시장의 선정, 사업성 분석, 마케팅 및 판로확보 등의 사업화 추진경위 및 현황/향후 시장진입 및 판매확대를 위한 사업화 전략 및 일정 등 기재

6. 총 사업비 현황

가. 사업비 구성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금액	비율
합계(A+B)				
정부지원금(A)				
민간부담금 (B)	주관기관	현금		
		현물		

※ 정부지원금은 중견기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60%이내, 중소기업의 경우 75% 이내 지원

※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20%이상 부담

나. 사업비 사용 계획

(단위 : 천원, %)

구분	구분명	2023년 예산액		
		인원	기타	비율
인건비	내부인건비			0.0
	외부인건비			
	소 계			
간접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디자인정보 조사비			
	소 계			
총 계				100.0

7. 사업비 세부내역

가. 사업비 총괄

(단위: 천원, %)

구분	2023년 예산액									
	인건비				기타				합계	
	인원	기타	비율	인원	기타	비율	인원	기타	비율	
인건비		100	해당 없음	100		해당 없음	100		해당 없음	100
간접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기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나.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 모두 작성)

1) 인건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성명	직위	실지 금액 (A)	참여율 (%) (B)	참여 기간(월) (C)	합 계 (A×B×C/100)		
						현금	현물	계
내 부 인건비	주관 기관					해 당 없 음		
						해 당 없 음		
						해 당 없 음		
		소 계						
	협력 기관						해 당 없 음	
							해 당 없 음	
							해 당 없 음	
소 계								
외 부 인건비	협력 기관					해 당 없 음		
						해 당 없 음		
						해 당 없 음		
	소 계							
합 계								

작성요령

- 가) 인건비는 과제에 실제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협력기관에 소속된 자에 대한 내부인건비, 협력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나 과제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외부인건비로 구분한다.
- 나) 인건비 기준단가는 협력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여액으로 한다. 실지급여액은 연봉총액 또는 전년도 연말정산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1년 미만인 자는 월 평균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인건비는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 ① 과제책임자는 30%이상, 참여연구원은 10%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수행기관의 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참여과제수는 과제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참여기관 내부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 라) 디자인개발과제의 인건비 비율은 총 디자인개발 사업비의 100%까지 계상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
- 마) 참여하는 기관 대표자의 직계 존비속의 경우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기업승계 등 불가피한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한 후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참여할 수 있다.
- 바) 유형별 해당연도 인건비의 세부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인건비 세부 산정기준 >

세 목	산 정 기 준	
내부인건비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연봉제 비적용기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월 평균급여액 × 참여기간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외부인건비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 원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르되, 4대 보험과 퇴직금 관련 비용은 산정할 수 없음
	학생 연구원	▪ 박사이상 : 3,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학사이하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기 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외부연구원의 인건비는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 산정기준을 따름 ※ 학생 연구원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상 ※ 프리랜서의 경우 참여기관과의 과제수행에 따른 계약에 의해 단가를 적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위탁기관의 급여기준을 상회할 수 없음.		

2) 직접비 소요명세 (협력기관만 작성)

구분	내역	규격	단위	수량 (회수)	단가 (천원)	금액 (천원)	용도	비고	
협력기관명 (1)	연구장비·재료비								
	소계	천 원							
	연구활동비								
	소계	천 원							
	디자인정보조사비								
소계	천 원								
합계	천 원								

구분	내역	규격	단위	수량 (회수)	단가 (천원)	금액 (천원)	용도	비고	
협력기관명 (2)	연구장비·재료비								
	소계	천 원							
	연구활동비								
	소계	천 원							
	디자인정보조사비								
소계	천 원								
합계	천 원								

<연구장비·재료비>

가)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① 해당 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 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로 사용한다. (단, 연구공간에 대한 것은 제외)
- ② 디자인개발에 필요한 기기·장비,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협력기관의 기보유 장비·시설 및 대학·연구기관 등의 장비 등을 우선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른 수수료 등 관련 부대경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 ③ 외부로부터의 임차 등이 불가능하여 1천만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장비 등을 불가피하게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 별지 서식의 연구기자재 구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상기 ③의 경우,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구분하여 계상할 수 있다.
- ⑤ 협력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사용료는 장부가의 20%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

나) 재료구입비, 전산처리 및 관리비

재료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나, 협력기관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 중인 것은 현물로 산정하되, 협력기관에서 구매한 원가 또는 참여기관이 생산·판매가로 책정한 원가로 현물을 산정한다.

다) 시제품 제작경비

협력기관의 보유시설 부족 등으로 시제품(디자인 Mock-up, 워킹 Mock-up 등) 등을 외주 가공 하는 경우에 소요비용을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협력기관에서 직접 제작 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은 재료비, 인건비 등의 비목에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활동비>

가) 출장여비

- ① 연구원의 국내·외 여비는 협력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② 협력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국내·외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에 해당하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한다.

나) 수용비 및 수수료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위탁정산 수수료 등으로 사용한다. 다만,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 보험료, 경상피복비 등은 계상할 수 없다.

다) 전문가 활용비 및 디자인정보수집비

- ①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디자인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특허정보 조사비, 표준정보조사비, 표준화 활동비,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등으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사용한다.
- ② 전문가활용비는 디자인개발을 위해 외부전문가 활용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단, 전문가 활용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해당기관 소속 전문가를 위한 비용은 계상할 수 없다.
- ③ 협력기관은 해당과제 참여연구원의 디자인역량강화계획에 따른 개발기간내에 실시 예정인 디자인관련 교육훈련비를 계상할 수 있다.

<디자인정보 조사비>

가) 디자인 정보조사(시장조사, 소비자조사 등 리서치)를 위하여 전문업체 활용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 할 수 있다.

※ 과제선정평가지 주요 검토사항으로 디자인개발과 관련 있는 사업비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8. 기업(기관) 현황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 모두 작성)

가. 참여인력 현황 (기업명 :)

번호	성명	직위	생년 월일 (성별)	전공 및 학위				담당 분야	본과제 참여율 (%)
				학고	취득 년도	전공	학위		
1			YYMMDD (남)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작성 요령

- '참여인력 현황'에는 과제책임자도 기재
- 담당분야는 해당 과제 내용 중 담당 개발 내용을 명시
- 본 과제 참여율은 총 참여기간동안의 연평균 참여율을 말함
- 본 과제 참여율 산정 방법
 - 본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정부출연연구사업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 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함
 -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①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 ②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이 경우 수행과제와 중복되는 기간은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아야 함)
 - ③ 인건비를 지급 받지 아니하는 정책지정 과제
 - ④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파견 등의 사유로 외부기관에 소속되어 그 기관의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사업 참여율
 -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해당연구원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제별 참여율을 합한 것을 말함
 -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연구원이 참여하면 개인 참여 비율을 반드시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 중인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 정부출연연구사업 참여 과제 수 : 국가연구개발 동시 수행과제 수 제한 제도(3책 5공) 적용함
 - 과제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과제책임자 과제 수도 포함)
 -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과제는 3책 5공에 포함하지 않음
 - ①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 ③ 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과제(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
 -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공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
 - ⑤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사업
-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은 공고일 이후 동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 계획 및 해당 연구원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작성(신규 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나. 기업(기관) 정보 현황

※ 입력 정보가 허위일 경우 협약 해약 및 지원제외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주관기관, 참여기관 각각 작성

주관기관	<input type="checkbox"/> 주관기관 <input type="checkbox"/> 협력기관 ※해당란에 √ 표시
기업명	※ 기업명과 법적 지위(본점, 지점)를 기재 (예: (주)한국기업(본점))
주요사업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예산	/
사업비율	
사업비율	
사업비율	
사업비율	
사업비율	500% 미만이어야 함
사업비율	※표준산업분류 상의 세세분류기재 (예. 29351 재봉기 및 자수기 제조업)
사업비율	(-)
사업비율	
사업비율	
사업비율	
사업비율	※ 본 과제와 관련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기재함
사업비율	※ 개발실적은 개발에 성공한 기술명 또는 수행 중인 과제명 및 사업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함
사업비율	※ 사업화 실적은 매출처, 판매수량, 매출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함
사업비율	※ 기업의 견실성, 연구능력, 기술실시능력에 대한 과제책임자 자체평가 기재
사업비율	※ 신용거래 불량 여부 사전 확인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참여기업 대표의 신용거래불량이 확인된 경우, 완전자본잠식,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참여 배제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WC300기업, 글로벌강소기업, 글로벌 전문기업, 지역형강소기업)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희망엔지니어적금 및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비수도권 소재기업 (본사) (서울·인천·경기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기업)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우수디자인 전문회사 선정기업 (‘14~’15)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 상기 표의 재무현황 데이터는 최근년도(2014년도) 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사업명	
과제명	
주관기관명	
협력기관명	

과제 수행과 관련한 재무건전성의 확인을 위하여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대표자에 대하여 정부출연금 지급전 수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용상태를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

대 표 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협력기관명(1) :

대 표 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협력기관명(2) :

대 표 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한국디자인진흥원장 귀하

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 청렴 서약서

「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인 (이하 “본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 ① 본인은 전담기관은 물론 누구에게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청탁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 ② 본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전담기관에 대해 일체의 금품, 향응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 ③ 본인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 ④ 본인은 전담기관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단호히 거절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사업선정 취소 등의 어떠한 불이익 처분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15 년 월 일

위 신청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디자인진흥원장 귀하